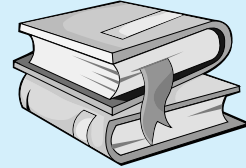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규칙 중 일부개정 내용

법률 개정(법률 제847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 및 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실시기관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개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개정내용

1. 노·사협의체 신설(법제29조의2)

◇ 노·사협의체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작업의 시작시간
- (2)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등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개 정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2.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제26조의3)

[본조신설 2007.12.28]

◇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3. 노·협의체 운영방법(제26조의5)

개 정

-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본다.

4. 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 검정기관 변경

(시행령 제33조의12)

◇ 제1회 시험 실시후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이 중단된 이후 검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을 현행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개 정

- 제33조의12(시험실시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생략)

5. 안전·보건교육 제도 정비

(규칙 제92조의5 및 별표 제8의2)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의 실시시기 및 내용 등이 현행 노동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시행토록 개정하였다.

개 정

- 제92조의5(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등)
- ①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② 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별표8의2에 규정

교육내용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종류 및 그 유해·위험성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응급조치 및 긴급대피 요령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그 밖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 시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2007.7.27>

6.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 개선

◇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이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는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중전 60일) 이내에 노출기준 초과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개정 하였다.

개 정

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측정결과를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결과는 당해연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산자료로 공단에 제출할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2)서식의 노출기준 초과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기간내에 동 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송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12.31]

7.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규칙 제105조)

◇ 건강진단기관은 개인의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에게는 질병요관찰자·유소견자의 건강진단 결과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토록 하였다.

◇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병력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 정

제105조 (건강진단결과보고)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2007.12.31>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배치전·임시건강진단결과표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받으

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 ⑥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8.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개선

(규칙 별표 15의2)

◇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로 함. 다만, 지정하려는 년도의 직전 년도에 법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 발생 건설업체는 제외한다.

개 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9. 설계·완성검사 대상에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추가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설계 및 완성검사를 받고, 이를 사용하는 자는 정기 및 자체검사를 실시하

도록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검사대상에 추가하였다. (규칙 제58조제2호)

개 정

제58조 (검사대상 기계·기구등)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7.10.16, 2003.7.7, 2007.12.31>

1. 크레인(정격하중 0.5톤 이상인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 그 외의 리프트는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승강기(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한다)
 4. 압력용기[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 매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 세제곱미터)의 곱이 1 이상인 것에 한한다]
- 5~8. 생략

제34조 (안전인증)

① 생략

②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⑥ 생략

10.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제도 도입

(법 제42조의2 신설)

◇ 지방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유해인자 노출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 노출기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 정

제97조의4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작업방법 또는 사용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31]

제42조의2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1.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 제한

(법 제62조제3항 신설)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시설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산재예방활동 목적에 사용하지 않

는 경우 및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 토록 하였다.

◇ 산업재해예방시설 지원금에 대해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개 정

제143조 (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제2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보조·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년
2.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 1년
3.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 2년

[본조신설 2007.12.31]

제62조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5.17>

II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1.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및 등받이울 설치 기준 개정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및 등받이울은 ILO(국제기준) 및 현실에 맞게 기준을 합리화 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토록 하였다.

개 정

- 제20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2006.12.30, 2008.1.16>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3.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4.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이동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8.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2.5미터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신설)
 - ② 잠함(潛函)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멍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6>

<개정전>

- 제20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6. 생략
 7.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할 것 (높이 2.5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잠함(潛函)내 사

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멍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화염방지기의 성능 등의 한국산업표준(KS) 준용

◇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산업표준(KS)중 화염방지장치 표준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제정하였다.

개 정

- 제28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때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섭씨 65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경우로서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중 화염방지장치 표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보수·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개정 2008.1.16>

<개정전>

제28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 ① 생략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용량·내식성·정확도 기타 성능이 충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보수·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피뢰침 설치규격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일원화

◇ 다른 법령(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기준 개정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혼선 및 부담이 발생하여 피뢰침 설치기준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피뢰설비 표준으로 조정, 통일성을 기하고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과 형평성을 기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토록 하였다.

개 정

제357조(피뢰침의 설치)

- ①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는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 2003.8.18, 2008.1.16>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피뢰침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6>

<개정전>

제357조 (피뢰침의 설치) ①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는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판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통전시켜도 불꽃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밀폐구조의 저장탑·저장조 등의 시설물이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고, 당해 시설물의 대지접지저항이 5옴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 2003.8.18>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피뢰침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피뢰침의 보호각은 45도 이하로 할 것
 2. 피뢰침을 접지하기 위한 접지극과 대지간의 접지저항은 10옴 이하로 할 것
 3. 피뢰침과 접지극을 연결하는 피뢰도선은 단면적이 30제곱밀리미터 이상인 동선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할 것
 4. 피뢰침은 가연성 가스 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밸브·게이지(gauge) 및 배기구 등은 시설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금속망이나 가공지선(가공지선)등을 설치하여 접지저항을 10옴 이하로 낮추는 등으로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8.18>

4. 중량물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

◇ 사업주는 중량물의 종류별, 작업방법별, 작업 장소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사업장 현실을 감안하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 필수사항으로 간소화 하도록 개정 하였다.

개 정

제462조 (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6>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전>

제462조 (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2. 취급방법 및 순서
 3.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② 생략

5. 항만하역 작업 시 작업면의 조도 명확화

◇ 현재 항만하역 근로자가 하역·운반 등의 작업시 유지하여야 할 조명의 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의 안전기준 준수에 대한 혼선 발생 및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의 개입 소지 발생가 발생할수 있어 항만하역·운반 작업시 필요한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명확히 하여 사업주 자율 안전관리 유도 및 행정지도 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주고자 개정하였다

개 정

제485조 (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선박에 화물을 싣고, 선박으로부터 물건을 내릴 때, 또는 선박에 있어 화물을 이동할 때의 작업(이하 “항만하역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6>

<개정전>

제485조 (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선박에 화물을 싣고, 선박으로부터 물건을 내릴 때, 또는 선박에 있어 화물을 이동할 때의 작업(이하 “항만하역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및 내용 개선

◇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사무직은 매월 1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월 실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위해 분기 6시간(사무직은 분기 3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개정하였다.

(규칙 별표 8)

개 정

【별표 8】

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관련)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가. 정기 교육	사무직종사근로자	매월 1시간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종사근로자외의 근로자	매월 2시간 또는 분기 6시간 이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건설업 종사근로자는 매월 2시간 이상)
나.~라.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현행과 같음)
○ <u>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산업재해 사례에 관한 사항</u>
○ <u>재해발생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u>

- 직업성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7.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불이행시 처벌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신설)

구 분	해당조항	위반행위	부과금액 (만원)
16의2.노사협 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 (법 제29조의2 제6항)	법 제72조제 2항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300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10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타 교육과정(신규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 하였다

구 분	해당조항	위반행위	부과금액 (만원)
31.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3항)	법 제72조제 3항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	30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5